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9. 6. 1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00호로 2019년 6월 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형평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연가제도 운영 개선

- 1) 신규임용자 등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18조)
- 2) 연가 당겨쓰기 제도 개선(안 제20조의 2)
- 3) 연가사용권장제 도입(안 제20조의 3)
- 4) 연가 일수 부여 방식의 합리화(안 제21조)

나. 공가 규정 확대(안 제23조)

- 1) 결핵검진 및 노동조합 대의원회 참석

- 2) 오염인근지역으로의 출장 파견의 경우 예방접종, 원격지 전보 발령
- 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 확대 운영 및 사용기준 명문화
- 1)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확대 및 사용기준 명문화(안 제24조)
 - 2) 경조사 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별표3)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위임사항과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특별휴가, 연가제도, 공가제도 규정을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8조에서는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였으며,
 - 안 제20조의2에서는 자유로운 연가 사용을 위한 연가 당겨쓰기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20조의3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가 사용 권장제를 도입하였으며,

- 안 제21조에서는 연도 중 휴직하거나 퇴직 또는 임용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등 연가 일수 부여 방식의 합리화를 기하였으며,
 - 안 제23조에서는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받거나, 「검역법」에 따른 오염지역 등으로 공무국외출장 등을 가기 위한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 공무원 노동조합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와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에도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등 공가 허가 사유를 확대하였으며,
 - 안 제24조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 기간 동안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 안 제24조의2 및 별표 5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가 및 공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①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개정 2019. 4. 16.>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frac{\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 연도 연가 일수}$$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 4. 16.>

1.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휴직기간
2.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 나. 퇴직일부터의 기간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6.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뺀다. <개정 2019. 4. 16.>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19. 4. 16.>

⑦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신설 2019. 4. 16.>

[본조신설 2018. 12. 18.]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 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본조신설 2018. 12. 18.]

제7조의4(연가 사용의 권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본조신설 2018. 12. 18.]

제7조의6(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2018. 12. 18., 2019. 4. 16.>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

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개정 2019. 4. 16.>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 공무원은 남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 5. 31., 2018. 12. 18.>
- ⑦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

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7은 제7조의8로 이동 <2019. 4. 16.>]

제7조의9(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7조의5, 제7조의7제6항·제7항 및 제7조의8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9. 4. 16.>

[전문개정 2018. 12. 18.]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9. 6. 1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01호로 2019년 6월 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행정안전부로부터 산정된 국가시책사업 추진 및 행정수요에 따른 일반직 증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개정(안 제2조)

- ‘1,413’을 ‘1,424’로 개정(증 11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386’을 ‘1,397’로 개정(증 11명)

나. 정원의 직급별 정원포 개정(별표 3)

- 총계 ‘1,413’를 ‘1,424’로 개정(증 11명)
- 일반직 총계 ‘1,408’을 ‘1,419’로 개정(증 11명)
- 일반직 6급 이하 ‘1,331’를 ‘1,342’로 개정(증 11명)

기관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직급별						
총 계		1,424	1,424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419	1,419			
일	3급	1	1	-	-	-
	4급	9	7	1	1	-
반	5급	65	33	2	12	18
	6급 이하	1,342	1,342			
직	전문경력관	2	2			
	별정직 계	4	4			
6급 상당 이하		4	4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일반직 신규 임용 인건비(9급 3호봉 기준)

1) 소요예산액

(단위:천원)

합계	국비	시비	구비	비고
229,640	-	-	229,640	

2) 세부내역

○ 채용인원:11명(6급 2명, 7급 1명, 8급 2명, 9급 6명)

(단위: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합 계	229,640	

기본급 (봉급)	119,490	6급, 7급, 8급, 9급 각 직급 3호봉 기준
직급보조비	9,870	월 직급보조비 (6급 165천원, 7급 155천원, 8·9급 145천원)
국민건강 보험금	6,228	보수월액의 3.06% 부담
연금 부담금 등	30,624	연금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수 당	63,428	- 가족수당 2,640천원 - 시간외근무수당 35,504천원 - 정액급식비 8,580천원 - 명절휴가비 11,949천원 - 연가보상비 2,655천원 - 기술업무수당 2,100천원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구성으로 조직의 운영 건전성을 제고하여 국가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증원 하려는 것으로서,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본문의 개정사항은 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현재 1,413명에서 1,424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 자치부에서 통보된 기준인건비 1,269억원 내에서 11명을 증원하려는 것이며,

- 안 제4조 “별표3”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안 제2조에서의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직 6급이하 정원을 11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등 국가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여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신규 총원하는 것으로써, 2019년도 우리구의 기준인건비 총액은 1,269억원이고, 예산 편성액은 1,266억원이며, 신규 증원되는 11명의 인건비는 연간 2억 2,964만원으로, 개정안에 따른 인력증원 이후에도 구의 총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도 기준인건비 및 예산편성현황’ 참조)

붙임 1

2019년도 기준인건비 및 예산편성 현황

□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 126,903,349천원

□ 영등포구 예산편성금액 : 126,607,562천원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총 계	126,607,562
101 인건비	101,540,047
101-01 보수	79,658,378
101-02 기타직보수	8,231,588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3,650,081
204 직무수행경비	2,793,796
204-02 직급보조비	2,793,796
303 포상금	4,509,542
303-02 성과상여금	4,509,542
304 연금부담금등	17,764,177
304-01 연금부담금	14,565,595
304-02 국민건강보험금	3,198,582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이하 "자율범위"라 한다)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과 자율범위의 규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12. 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

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9. 6. 1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02호로 2019년 6월 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현 시대상황에 맞게 구민상의 시상부문을 정비함으로써 구민상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민상에 대한 구민의 공감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민상의 종류 정비(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 1) 개인, 단체 부문 통합하여 부문별 2명(단체 포함)으로 시상
- 2) 사회질서확립상과 봉사상을 봉사상으로 통합, 모범청소년상 및 과학상 삭제, 문화상을 문화예술상으로 명칭 변경, 지역공헌상, 복지상 신설

나.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 및 단체 등에게 수여하는 영등포구 구민상 수여대상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현실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는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총 10개 부분에서 9개 부문으로 조정하고, 개인 및 단체를 통합 시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구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상세한 심사기준을 규정함.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민상 수상부문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구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수상심사기준을 보다 현실화,

세분화하여 영등포구 구민상의 권위와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9. 6. 1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03호로 2019년 6월 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익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사용료 감면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를 반영하여 용어 정비(안 제9조)
- 나.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사용료 감면(안 별표 3)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와 공공 체육시설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활성화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공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9조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별표3에서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음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공공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민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17. 12. 29.>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

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2. 8.>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인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